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동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58646)
2.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동부자산운용 주식회사(대표전화 : 787-37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 (www.dongbuam.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4.5.26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5.28**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9. 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상세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II.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국내주식 중 가치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이상(단,가치주에의 투자는 60%이상), 채권에 35%이하 등으로 투자하며 그 외 투자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동부자산운용 애널리스트의 역량 집중

- 섹터 애널리스트에 의한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으로 유망종목 발굴에 주력
-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적 발굴

(2) 가치주 장기투자 전략

- PBR&ROE를 기준으로 선정된 가치주에 대해 주식투자비중의 60% 이상 유지
-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주 장기보유

(3) 포트폴리오 구성

- 균등분할투자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단, 시가총액, 저평가 정도 등을 감안해 편입비 조정 가능
- 중소형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 30% 이상 유지
-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
 -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시 분할 매도
 - 회사의 고유경쟁력,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시 즉각 교체

(4) 위험관리

- 주식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종목별 마이너스 수익률 진행 정도에 대해 구간별로 관리할 예정
- 특정 섹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자제로 섹터간 위험관리 진행.

(5) 비교지수 : KOSPI x 95% + Call x 5%

-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비교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비교지수수익률은 동부자산운용 홈페이지(www.dongbuam.co.kr)에서 확인가능)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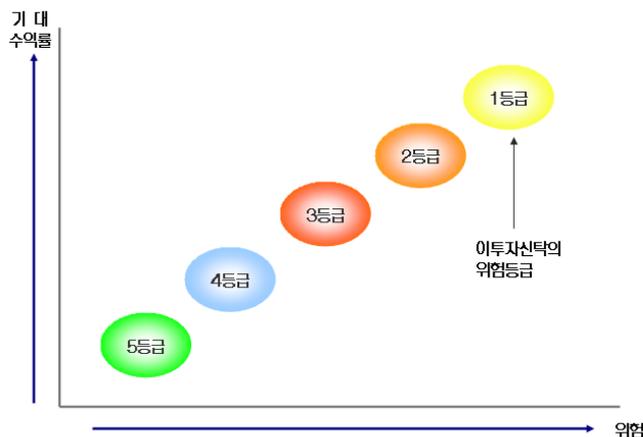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4. 5. 22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기호삼	1968년	책임운 용전문 인력	32개	9,910억	- 11.4~ 동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현직) - 03.01~11.4 하나 UBS 자산운용 - 95.02~03.1 대한투자신탁
정상진	1970년	부책임 운용전문 인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1개	6,517억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의 팀운용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교지수는 KOSPI*95% + Call * 5%로서,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도	최근 1년차 2013.01.21 ~ 2014.01.20	최근 2년차 2012.01.21 ~ 2013.01.20	최근 3년차 2011.01.21 ~ 2012.01.20	최근 4년차 2010.01.21 ~ 2011.01.20	최근 5년차 2009.01.21 ~ 2010.01.20
운용펀드	0.16	0.31	-1.70	19.68	65.36
A	-0.21	-0.08	-2.03	19.90	65.79
C1	-0.99	-0.86	-2.76	18.94	64.26
C-I	0.47	0.60	-1.38	23.79	
C-F	0.51	0.64	-1.35	-11.10	66.91
C-E	-0.42	-0.48	-2.58	19.03	64.56
C-H	-0.61	-0.65	-2.71	18.91	64.40
C2	-0.87	-0.75	-2.67	18.97	64.26
C3	-0.74	-0.62	-2.53	19.01	64.26
C4	-0.62	-0.50	-2.42	19.04	64.26

C5	-0.49	-0.37	-2.30	19.08	64.26
C-B	0.00	-8.63	-12.22		
비교지수	-1.47	2.06	-6.79	21.82	49.32

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I	C-E	C-F	C-H	B	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	-	-	-	-	-	-	-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	-	-	-	-	환매금액의 1.0% 이내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								비고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I	C-F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0.72	1.5	1.38	1.25	1.13	1.0	0.04	0.0	
신탁업자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제)}	0.0044	0.0048	0.0041	0.0045	0.0043	0.0045	0.0045	0.0044	
총 보수비용 비율 ^{제)} TER	1.5044	2.2848	2.1641	2.0345	1.9143	1.7845	0.8245	0.7844	
증권거래비용 ^{제)}	0.4629	0.4711	0.4613	0.4609	0.4758	0.4631	0.4638	0.4636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				비고 (지급시기)
	C-E	C-H	B	S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0.7325	0.7325	매 3개월 후금
판매회사	0.8	1.0	0.75	0.35	
신탁업자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	0.0175	0.0175	0.0175	0.0175	
기타비용 ^{주1)}	0.0045	0.0044	0.0058	-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비율(TER) ^{주2)}	1.7645	1.9544	1.5358	-	-
증권거래비용 ^{주3)}	0.4621	0.4656	0.3317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2.7.21~2013.7.20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약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TER)은 집합투자기금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2.7.21~2013.7.20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단위: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255,553	592,513	964,012	2,067,998
C1 가입자로 자동전환시	240,030	714,467	1,175,334	2,497,401
Class C-E	204,299	644,051	1,128,878	2,569,645
Class C-F	82,488	260,043	455,798	1,037,525
Class C-H	221,099	697,013	1,221,709	2,780,953
Class C-I	86,699	273,317	479,064	1,090,484
Class B	161,228	508,270	890,884	2,027,902
Class S	118,650	374,044	655,616	1,492,367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Class B 및 Class S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ass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다.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C1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C2	Class C1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3	Class C2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4	Class C3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5	Class C4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I	납입금액 50억이상 가입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Class C-F	집합투자기구 및 Wrap계좌 전용
Class C-E	인터넷 가입 투자자 전용
Class 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Class B	가입제한 없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14.0%)을 부담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ongbuam.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준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 3시)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2) 환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4. 전환 절차 및 방법 :

(1)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 클래스에 한합니다.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6)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위 전환방법의 (1)에 불구하고 2010년 10월 18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부터 종류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0조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서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7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통합 재무제표			
항목	제 8 기(반기)	제 7 기	제 6 기
	20140120	20130720	20120720
I.운용자산	70,406,120,242	96,986,735,658	113,743,692,350

증권	69,109,929,343	91,979,196,610	107,430,386,165
현금 및 예치금	657,190,899	107,539,048	6,313,306,185
기타운용자산	639,000,000	4,900,000,000	
II. 기타자산	1,318,155,633	5,527,284,902	605,378,505
자산총계	71,724,275,875	102,514,020,560	114,349,070,855
II. 기타부채	294,260,390	6,068,288,710	549,419,370
부채총계	294,260,390	6,068,288,710	549,419,370
I. 원본	77,155,738,006	111,081,833,162	133,521,989,636
II. 수익조정금	2,173,451,700	1,694,826,889	-4,101,092,536
III. 이익잉여금	-7,899,174,221	-16,330,928,201	-15,621,245,615
자본총계	71,430,015,485	96,445,731,850	113,799,651,485
통합 손익계산서			
항목	제 8 기(반기)	제 7 기	제 6 기
	20140120	20130720	20120720
I. 운용수익	7,232,121,746	4,609,827,174	-14,322,579,664
이자수익	39,314,209	102,199,498	100,951,541
배당수익	631,919,790	1,075,611,581	1,031,671,423
매매/평가차익(손)	6,547,300,442	3,376,036,598	-15,544,888,029
기타이익	13,587,305	55,979,497	89,685,401
II. 운용비용	495,194,655	1,218,417,224	1,298,665,951
관련회사보수	492,670,811	1,212,386,650	1,291,211,497
기타비용	2,523,844	6,030,574	7,454,454
III. 당기 순이익	6,736,927,091	3,391,409,950	-15,621,245,615
* 매매회전율	116	226	250
* 매매수수료	177,533,176	505,528,954	626,108,285

간이투자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고객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 손실 예상 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